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06
------------	------

발의연월일 : 2017. 1. 2.

발 의 자 : 이찬열 · 황주홍 · 김종회

박광온 · 안규백 · 신경민

이춘석 · 김해영 · 전혜숙

고용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쳐별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 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8조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913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별 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별 칙) -----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	----- <u>5천만원</u> -----
하의 벌금에 처한다.	-----.